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1999. 12 . 18 평창군수(도시경제과장)
- 나. 회부일자 : 1999. 12. 20
- 다. 상정일자 : 제73회 평창군의회(정기회) 제1차조례특위('99.12.2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가. 제 안 이 유

- 행정규제완화와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나. 주 요 내 용

- 법에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삭제(안제2조제2항,안제25조)
-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관계조항개정(안제1조, 안제24조 제3항)
- 현행 법규상 나타난 불합리한 조정 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허해성)

- 본 조례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행정규제의 완화와 법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으로는

공사의 시행에 있어 급수공사에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던것을 사급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화 하고,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자격의 단서 규정인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이상 종사자의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수도계량기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하도록 하던 규정을 수도사용자가 원하는 곳에 정하되 검침이 용이한 곳에 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하던 규정을 삭제하였고, 급수중지한 경우 급수장치 손료에 대하여는 이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등 대부분 법에 근거하고 있지 않고 사실상 적용이 어려운등 행정편의 위주·이익을 위하여 규정된 조항을 개정·삭제하였으며 일부조항은 법상 위배되는 사항도 있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별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및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붙 임 :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 .